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④-1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지식재산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Union
Unitary Patent System**

연구자 : 김형건(부연구위원)
Kim, Hyung-Gun

2013. 9. 30.

요약문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노력

- 유럽연합의 기관, 회원국 및 유럽의 기업들은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및 유지비용의 절감과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일관성 있는 판결 등을 추구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왔음.
- 유럽에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합된 특허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설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부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음.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언어적 문제, 기술적 문제 및 법률적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2009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0년 7월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 언어로 채택하는 안이 제안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됨.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출범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도입을 반대하여 제외됨)이 유럽연합 단일

특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결과 2014년 1월 1일에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 그러나 출범을 앞둔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특허법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비판과 통합특허법원의 설치가 유럽연합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선결례가 존재하는 등 출범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는 특허출원인이 지정한 각 국가별로 효력을 갖는 국내특허(national patent)들을 묶음(bundle)의 형태로 부여하는 유럽의 현행 특허제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이므로 출범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

□ 유럽의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추진 경과에 관한 개관

- 유럽에서의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각 국가별로 특허의 침해 및 유·무효를 다투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문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의 가능성,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의 문제 등을 개관함.

- 국제회의의 개최 및 국제협약의 체결 등 특허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유럽의회가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을 승인하기까지의 추진 경과를 개관함.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및 분석
 - 단일특허제도에 의해 달라지는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특허의 효과, 특허료 등을 검토·분석함
 - 단일특허에 관한 분쟁을 담당할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관할,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등을 검토·분석함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에 관한 검토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의 내용과 결과에 관하여 검토함.
 -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례에 관하여 검토함.
- 단일특허제도의 출범에 대한 전망

III. 기대효과

- 유럽의 특허제도들 간의 비교·분석 자료 제공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에서 취득할 수 있는 특허가 개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국내특허와 유럽특허청이 부여하는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 세 종류의 특허로 늘어남.

- 특허의 취득 및 유지의 방법과 비용, 특허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있어서 이들 세 종류의 특허제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함.
- 정부 및 유관 기관, 국내 기업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유럽의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해 정부 및 유관 기관, 국내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제어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통합특허법원, 유럽특허, 공동체 특허, 단일특허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Efforts to Introduce the Unitary Patent System in Europe

-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in Europe has been ongoing over the past 40 years, and the European Union (“EU”) has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since 2003.
- EU's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had faced with serious obstacles such as disagreement in a language arrangement and legal challenges by EU member states, but the situation dramatically changed when the European Council had determined to set English, French and German as official languages for the unitary patent system.

Problem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 Two EU member states, Italy and Spai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in light that the “Enhanced Cooperation” among EU member states for the crea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 had been inappropriately implemented.
- Patent law experts criticized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because of the concerns that the difference in patent court

judge's expertise may cause inconsistency in decisions and forum shopping, the unitary patent system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t is not clear how to finance administration expens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Need for Overview and Analysis of Main Features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 Since the unitary patent system is a new European patent system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4, it is necessary to overview and analyze main features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II. Main Contents

- Overview of problems of the current patent systems in Europe and the history of effort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Protection in Europe
 - This report overviews problems related to patent registration, patent fee, patent litigation, and etc. under the current patent systems in Europe.
 - This report overviews the history of efforts for introducing the unitary patent protection in Europe and how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has been approved.
- Overview and Analysis of Main Features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 This report overviews and analyzes the new patent registration scheme, patent fee scheme, unitary protection by the issued patent, and etc. under the unitary patent system.
- This report overviews and analyzes structur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jurisdiction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court languages, and translation of patent documents.
- Issues and Proble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 This report analyzes the lawsuits brought by Spain and Italy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 This report scrutinizes expert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on the previous unified patent court case.
- Pro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Unitary Patent System

III. The Effect Expected

- This report provides a comparative review and analysis of the different patent systems in Europe.
- This report provides planning and preparation resources for related organizations, governmental bodies, domestic companies, etc.

► Key Words : European Union Unitary Patent System, Unified Patent Court, European Patent, Community Patent, Unitary Pat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17
제 1 절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7
1. 현행 유럽특허제도에 대한 개관	17
2.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9
제 2 절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24
1. 단일특허제도 도입의 배경: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시도	24
2. 단일특허제도 도입 추진 경과	30
제 3 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33
제 1 절 단일특허제도의 개관	33
1. 단일특허의 출원·심사·등록	33
2. 단일특허의 효과	34
3. 특허료(renewal fees)	35
4. 번역비용	36

제 2 절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	38
1.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관할	38
2. 1심법원	39
3. 항소법원	40
4. 재판부의 구성	40
5. 재판 관할	41
6. 대리인	42
7. 협약의 발효와 경과규정	42
제 3 절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43
제 4 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45
제 1 절 서 설	45
제 2 절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46
1. 이탈리아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	46
2. 스페인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	49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51
제 3 절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	54
1.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54
2.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59
제 4 절 소 결	60
제 5 장 결 론	63
참 고 문 헌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유럽연합의 기관, 회원국 및 유럽의 기업들은 특허출원비용의 측면이나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일관성 있는 판결 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단일특허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왔다. 이에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으나,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는 언어적 문제 및 기술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 12월에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고, 2010년 7월에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3개 국어를 공용 언어로 채택하는 안이 제안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반대로 제외됨)이 단일특허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안이 지난 2012년 12월 11일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는 1) “강화된 협력”의 구축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단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신설하고, 2)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3개 국어를 특허문헌을 위한 공용 언어로 사용하며, 3) 단일특허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이하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표결을 진행하여 단일특허제도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인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¹⁾ 「번

1) Regulation No. 1257/2012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Crea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 (이하 “Regulation No. 1257/2012”).

역에 관한 규정」,²⁾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³⁾을 모두 승인하였다. 유럽의회가 이들 법안들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에서 지난 40여 년 이상 지속되어져 왔던 단일한 효력의 특허 도입에 관한 논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단일특허제도는 2014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이 출범하게 될 단일특허제도는 특허의 출원인이 지정한 유럽의 각 국가에서만 효력을 갖는 개별 국내특허가 묶음의 형태로 부여되고, 각 국가(특허청)가 독자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무효 여부 또는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현행의 유럽특허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특허제도의 출범은 곧 유럽연합이 새로운 특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일특허제도 도입의 배경과 논의과정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유럽 각국의 특허법, 유럽특허협약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유럽특허제도 주요 내용과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과 그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특허법 전문가들과 실무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향후 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동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Council Regulation No. 1260/2012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Crea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 with Regard to the Applicable Translation Arrangements (이하 “Regulation No. 1260/2012”).

3)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Council Doc. 16351/1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유럽에서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추진 경과에 대한 개관,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단일특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과 과제 도출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을 특허의 출원·심사·등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현행 유럽특허제도가 가지는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특허 분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일특허제도 도입의 배경과 경과에 관하여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출범을 앞둔 단일특허제도하에서의 특허의 출원·심사·등록과 특허의 효과, 특허료 등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관한 내용과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에 관한 내용 등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에 대한 분석과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을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검토·분석하고, 단일특허제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해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전 3장을 통해 검토·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제 2 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제 1 절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유럽특허제도에 대한 개관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의 개별 국가에 각각 국내특허(이하 “개별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2)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그리고 3)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해 부여되는 「유럽특허」를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개별특허」의 출원을 통해 유럽 다수의 국가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이하 “출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각 국가에 국내특허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특허」의 출원을 통해 유럽 다수의 국가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허협력조약 회원국들의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여 국제조사(선행기술조사) 및 국제예비심사(특허성의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를 받아야 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 내⁴⁾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들의 특허청(지정관청)에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여 해당 지정관청의 심사를 받아 국내특허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다수

4) 「국제특허」의 출원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며, 출원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관청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안재현,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2호 (2013), 7면.

의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들⁵⁾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특허출원인은 각 지정국가에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여 각 지정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특허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특허」의 출원을 통해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이 각 국가별로 모든 절차(출원·심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에, 특허의 출원 절차가 통합되어 있는 「국제특허」의 출원을 통해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의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그리고 특허의 출원 및 심사 절차가 통합되어 있는 「유럽특허」의 출원을 통해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의 등록 절차를 각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밟아야 하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출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럽 전역 또는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특허출원인이 어떠한 출원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유럽 전역 또는 다수의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하나의 특허, 즉 “지역특허(regional patent)”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1국 1특허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국내특허(bundle of national patents)의 묶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⁶⁾

현행 유럽특허제도 하에서는 특허출원인이 “지역특허”가 아닌 “다수의 국내특허의 묶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의 유효 또는 침해 여부를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특허

5)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을 포함한 38개 회원국(2012년 11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특허조약이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가진다.

6) 박진석,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 지식과 권리 통권 제15호(2012), 54면.

가 등록되어 있는 각 국가마다 무효확인소송 또는 침해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표-1> 출원 방법에 따른 유럽에서의 특허 취득 비교

취득 방법	개 요	출원·심사·등록
「개별특허」의 출원	유럽의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개별국가의 특허청이 특허를 심사·등록함	출원, 심사, 등록 모두 각 국가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국제특허」의 출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지정관청이 특허를 심사·등록함	출원 절차의 통합, 심사 및 등록은 각 국가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유럽특허」의 출원	유럽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특허를 심사하며, 등록은 각 국가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함	출원 및 심사 절차의 통합, 등록은 각 국가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출처: 심미랑,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⁷⁾

2.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 특허 등록 및 유지에 있어서의 문제점

유럽연합은 다수의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의 수가 22개에 달한다. 유럽특허조약과 EU Directive와 EU Regulation에 의한 규율 등으로 인해 특허제도가 실

7) 심미랑,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P Insight Vol. 1 창간호 (2013), 47면; 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함.

체법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그들의 고유한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회원국에 의해 부여된 특허(국내특허)는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유럽특허제도 하에서 유럽 전역 또는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데, 이는 곧 타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하는데 36,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중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23,000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에 반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850유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⁹⁾ 이처럼 유럽 전역 또는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에 출원되는 특허가 주로 국내 출원, 즉 「개별특허」의 출원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¹⁰⁾ 그로 인해 유럽 각 국의 특허청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의 특허출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¹⁾ 뿐만 아니라,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부여되는 「유럽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평균 5개국 이하의 국가를 지정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출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²⁾

8) The Economist, The EU's Unitary Patent: Yes, Ja, Oui, No, No (Dec. 15th, 2012).

9)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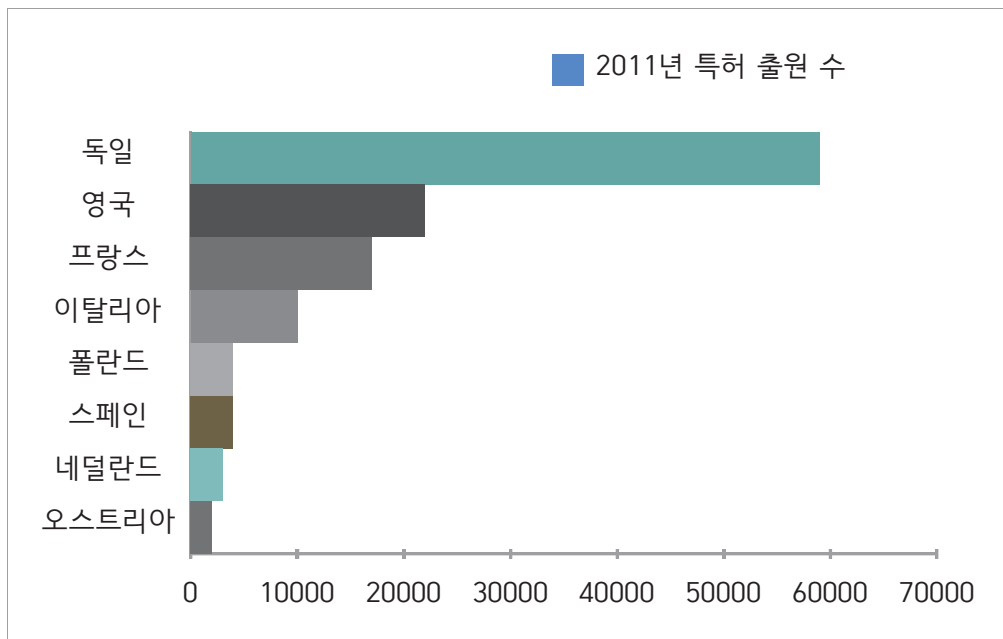
10) *Id.*

11)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유럽특허」의 출원신청이 약 2.5% 정도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출원신청은 약 10%가 늘었으며, 중국에서의 출원신청은 약 2/3 가량 늘었다. *Id.*; <그림-1> 참조.

12) 박진석, 앞의 논문, 54면; <그림-2> 참조.

유럽에서의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있어서의 고비용의 문제는 유럽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¹³⁾ 제한적인 특허출원은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innovation)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1> 출원 방법에 따른 유럽에서의 특허 취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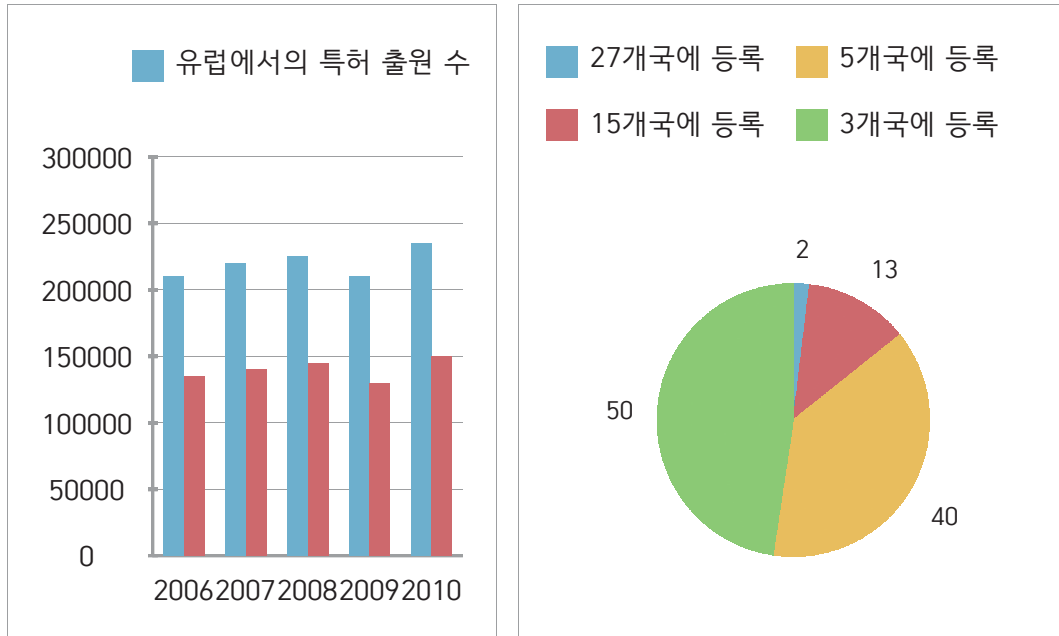
■ 특허 출원 비율

독일: 국내(79%), EU 회원국 (3.3%)	폴란드: 국내(94%), EU 회원국(2.9%)
영국: 국내(69%), EU 회원국 (7.8%)	스페인: 국내(95%), EU 회원국(2.1%)
프랑스: 국내(87%), EU 회원국 (5.8%)	네덜란드: 국내(89%), EU 회원국(5.4%)
이탈리아: 국내(90%), EU 회원국(5.8%)	오스트리아: 국내(87%), EU 회원국(8.9%)

(출처: The Economist, The EU's Patent)

13)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미 통합된 제도가 도입되어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 제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의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을 통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박진석, 위의 논문, 55면.

<그림-2> 출원 방법에 따른 유럽에서의 특허 취득 비교



(출처: 박진석,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경과와 전망)

(2) 특허 분쟁에 있어서의 문제점

현행 유럽특허제도 하에서는 출원방법, 즉 「개별특허」의 출원, 「국제특허」의 출원, 「유럽특허」의 출원에 관계없이 특허의 등록은 각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의 유효 또는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유럽 각 국가의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개별특허」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 효력을 가지는 「국제특허」나 「유럽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허협력조약 또는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하나의 소송으로 해당 특허가 효력을 가지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여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를 다툴 수 없다. 결국, 당사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을 가지는 각 국가들의 법원에서 동일한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동시 또는 순차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특허법과 제도 및 재판부의 전문성(예컨대, 특허소송의 빈도, 판사들의 특허법에 대한 지식과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 등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유·무효 또는 침해 여부에 대한 각 국 법원들 간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¹⁵⁾ 더 나아가서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¹⁶⁾ 특허 분쟁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⁷⁾

<표-2> 유럽 주요국의 특허소송제도 비교

국 가	소송제도의 특징	소송기간	평균 소송비용
프랑스	- 대륙법 체계 - 특허소송 관할집중 - 특허전문법원 부재	- 1심: 12-24개월 - 2심: 18-24개월	- 8만~15만 유로

14) 같은 이유에서, 특허권자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는 침해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런 점들이 유럽에서의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박진석, 위의 논문, 55면; <표-2> 참조.

15) 박진석, 위의 논문, 56면.

16) 예컨대, 특허침해 혐의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이탈리아나 벨기에와 같이 소송 진행이 느린 회원국의 법원에 비침해선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이 모순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he rules of lis pendens”에 따라 특허권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에서 제기한 소송절차를 유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진석, 위의 논문, 56면.

17) 박진석, 위의 논문, 56면.

제 2 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국 가	소송제도의 특징	소송기간	평균 소송비용
독일	- 대륙법 체계 - 무효/침해소송의 이원적 체계 - 특허전문법원 존재	- 1심: 12개월 - 2심: 15-18개월	- 1심: 5만 유로 - 2심: 7만 유로
이탈리아	- 대륙법 체계 - 특허소송 관할집중 - 특허전문법원 존재	- 1심: 2-24개월 - 2심: 18-24개월	- 1심: 5만~15만 유로 - 2심: 3만~7만 유로
스페인	- 대륙법 체계 - 특허소송 관할집중 - 상사법원이 특허사건 관할	- 1심: 12개월 - 2심: 12-24개월	- 1심: 10만 유로 - 2심: 5만 유로
영국	- 영미법 체계 - 특허소송 관할집중 - 특허전문법원 존재	- 1심: 12개월 - 2심: 12개월 - 3심: 24개월	- 1심: 55만~150만 유로 - 2심: 15만~150만 유로 - 3심: 15만~150만 유로

(출처: 박진석,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경과와 전망)

제 2 절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1. 단일특허제도 도입의 배경: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시도

유럽의 지도자들은 현행 유럽특허제도상의 문제점들, 다시 말해 1)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문제, 2) 특허 무효확인소송, 침해소송 등을 각 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3) 유럽 각 국의 법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성장, 혁신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특허제도가 더 이상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유럽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특허가 유럽 전역에서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결과, 지난 40여 년 동안 유럽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하나의 통합된 특허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한 특허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통합된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차례의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여러 국제협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¹⁸⁾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럽특허조약에 기초한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설립이라는 유럽특허제도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특허제도의 통합을 위한 유럽에서의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¹⁹⁾²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는 유럽특허조약이 체결되고 2년이 지난 1975년에 9개 국가(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프

18) Kevin P. Mahne, *A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for the European Union: An Analysis of Europe's Long Standing Attempt To Create a Supranational Patent System*, 9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162 (2012), at 164.

19) 일부 국가들이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관할권을 국제기구에 넘겨주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Id.*

20) <표-3>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도입 이전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시도 참조.

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간에 체결된 공동체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공동체특허조약은 「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다수의 국내특허의 묶음”을 하나로 합친 것에 해당하는 단일하고 자치적인 「공동체특허」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동 조약에 따라 1) 「공동체특허」는 유럽특허청에 의해 부여됨과 동시에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2)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단일하고 자치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동체특허」를 규율하는 단일한 규정 체계가 구축되게 되었다.

단일특허제도 도입 이전의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던 공동체특허조약은 단일 시장이 완성되는 1992년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발효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국가가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1985년에 공동체특허조약의 원안을 일부 수정한 공동체특허협약(Community Patent Agreement)이 12개국 사이에 타결되었으나, 역시 같은 이유에서 발효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2000년 8월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동 규정안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논의의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 언어의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표-3>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도입 이전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시도²¹⁾

연 도	실체법(안)	법 원
1973	○ 유럽특허조약 ²²⁾ : 1977년에 발효됨 - 예비심사 및 행정절차의 통합 - 개별국가의 특허법(특허 심사 및 등록 이후)을 부분적으로 통합	(없음)
1975	○ 1차 공동체특허조약 ²³⁾ : 발효되지 않음 - 유럽특허청이 단일하고 자치적인 공동체특허를 부여함	○ 1차 공동체특허조약 - 개별국가의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개별국가의 법원이 관여함) - 공동체특허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됨
1989	○ 2차 공동체특허조약 ²⁴⁾ : 발효되지 않음 - 1차 공동체특허조약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함 - 새로운 언어 방식의 도입	○ 2차 공동체특허조약 - 항소법원(Common Appeal Court)의 설치(개별국가의 법원이 관여함) - 공동체특허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됨 - 개별국가의 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한 사전심의 및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직접 항소를 허용함
1992	○ 리스본 회담(Lisbon Conference)의 실패 - 공동체특허조약의 시행을 위해 비준기준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21) Reto M. Hilty et al., *The Unitary Patent Package: 12 Reasons for Concern*,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Journal, Vol. 41 Iss. 10 (2012).

22)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EPC), 5 October 1973.

23) Convention for the European Patent for Common Market, 15 December 1975 (1976 OJ L 17, 1).

24) Agreement Relating to Community Patents, 15 December 1989 (1989 OJ L 401, 1).

제 2 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연 도	실체법(안)	법 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특허규정(안)²⁵: 발효되지 않음 - 유럽특허청에 의해 부여되는 단일하고 자치적인 공동체특허 - 특허실체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런던협정(London Agreement)²⁶: 2008년에 발효됨 - 유럽특허청과 같은 공식 언어를 가진 국가에 대한 특허 번역의 불필요 -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공식 언어로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특허규정(안) - 공동체특허에 대한 관할권만 가지는 공동체지적재산권 법원의 설치 - 침해 및 취소에 관한 전속 관할권 인정 (유럽특허청 항소, 유럽사법재판소 또는 개별국가 법원의 사전심의 불가능) - 개별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갈음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짐
2003/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특허규정 개정(안)²⁷: 발효되지 않음 - 유럽특허청에 의해 부여되는 단일하고 자치적인 공동체특허 - 특허실체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특허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관한 제안안과 공동체특허법원의 설치 및 제1심법원에서의 항소심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관한 제안(안) (Court Proposal 2003)²⁸: 발효되지 않음 - 공동체특허에 대한 관할권만 가지는 전통적인 유럽연합 법원으로서의 공동체특허법원의 설치 - 개별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갈음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짐

25)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Patent (2000 OJ C 337E, 278).

26)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65 EPC, 17 October 2000.

27) Council Doc. No. 15086/03; Council Doc. 711904, 8 March 2004.

28)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Conferring Jurisdiction on the Court of Justice in Disputes Relating to the Community Patent, COM(2003)827 Final; and Proposal for a

연 도	실체법(안)	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LA(유럽특허소송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협약(안)): 발효되지 않음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회원국 중심 -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만 가짐 - 모든 침해 및 무효소송을 관할하는 2개의 법원 (유럽특허청 항소심은 담당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유럽사법법원(ECJ) 선결적 판결 의뢰) - 각 국가 법원을 대신하며, 배타적 관할권을 가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특허규정 - 일반 접근²⁹⁾: 발효되지 않음 - 2004년 제안(안)을 재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공동체와 특허법원 및 특허법원 법령에 관한 조약안 (EEUPCT)³⁰⁾ (발효되지 않음) - 모든 침해 및 무효소송을 관할하는 2개의 법원 (유럽특허청 항소심은 담당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선결적 판결 의뢰) - 각 국가 법원을 대신하며, 배타적 관할권을 가짐

Council Decision Establishing the Community Patent Court and Concerning Appeals befor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OM(2003)828 Final.

29) Council Doc. No. 16113/09.

30) Draft Agreement on the European Community and Patents Court and Draft Statute.

연 도	실체법(안)	법 원
2010	○ 유럽연합 특허의 번역방식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ranslation Arrangements) ³¹⁾ - 특허문헌이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발표되며, 특허 청구범위는 다른 두 개의 공식 언어로 번역됨 -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만 추가 언어로 번역함	

2. 단일특허제도 도입 추진 경과³²⁾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으나,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는 언어적 문제 및 기술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 12월에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고, 2010년 7월에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3개 국어를 공용 언어로 채택하는 안이 제안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10년 12월,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열망하는 12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의 구축을 통한 제도의

31)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Arrangements for the European Union Patent, COM(2010)350 Final.

32) 단일특허제도의 추진 경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재현, 앞의 논문, 9-11면과 박진석, 앞의 논문, 56-61면의 내용 참조.

도입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제안서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유럽의회는 2011년 2월 15일에, 그리고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3월 10일에 각각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을 승인하였다. 2011년 4월 1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과 「번역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고, 이후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2년 12월 17일에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마침내 이들 두 법안을 승인하기에 이른다.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국제협약 체결의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11월 11일, 통합특허법원의 창설을 위한 국제협정의 초안이 공표되었으나, 2011년 12월 5일에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안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³³⁾ 이듬해인 2012년 5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고, 결국 2012년 6월 28일과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법원을 파리, 런던, 뮌헨에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찾게 된다.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강화된 협력”의 구축을 승인하였고, 12월 17일에 유럽연합이사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사회 및 의회의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긴 여정이 끝나게 된다.

33) 통합 특허법원의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가 격렬하게 대립하였던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안재현, 앞의 논문, 11면.

제 3 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제 1 절 단일특허제도의 개관

1. 단일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유럽특허」의 취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하고, 유럽특허청이 이를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된다.³⁴⁾ 하지만, 특허의 등록에 있어서는 유럽특허청의 등록결정이 있는 후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보내어 각 지정국의 국내특허로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유럽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결정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로서 등록을 마치면 된다.³⁵⁾

단일특허제도가 현행 유럽특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³⁶⁾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특허출원인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단일특허」만을 출원·취득하거나, 「단일특허」를 출원·취득함과 동시에 유럽특허조약의 13개의 회원국 일부 또는 전부로부터 「개별특허」를 추가적으로 출원·취득하거나,³⁷⁾ 또는 특허의 취득을 희망하는 국가들만을 지정국으로 하는 「유럽

34)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2개월 안에 유럽특허청(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9개월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안재현, 위의 논문, 11-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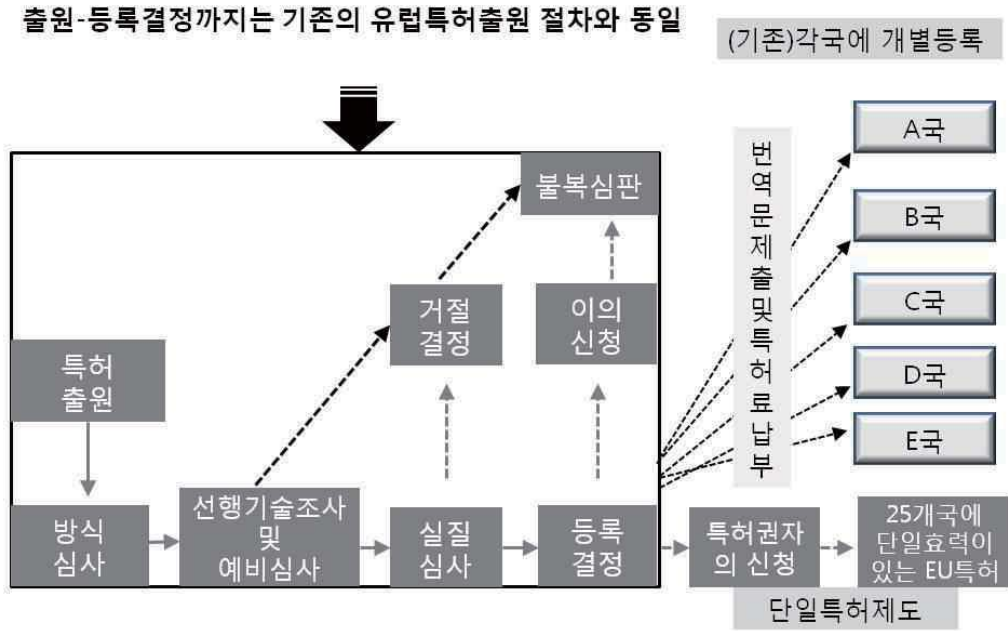
35) <그림-3> 참조.

36) “본 규정은 참가 회원국이 국내특허를 부여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가 회원국의 특허에 관한 법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Regulation No. 1257/2012, Preamble para 26.

37)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 25개 참여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38개 회원국이 유럽특허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허」만을 출원·취득할 수 있다.

<그림-3>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의 출원·등록 절차



(출처: 안재현,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2. 단일특허의 효과

「단일특허」는 모든 참여 회원국 -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스페인과 이탈리아 제외) - 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일된 보호를 제공받게 된다.³⁸⁾³⁹⁾ 이로 인해, 특허의 무효·제한·취소·양도 등의 효력은 모든 참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특

38) “「단일특허」는 통일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참가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지녀야 하고, 모든 참가 회원국에 대하여서만 제한, 이전, 철회 또는 소멸될 수 있다.” Regulation No. 1257/2012, §3(2).

39) “「단일특허」는 유럽특허청의 유럽특허공보에 특허의 허여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gulation No. 1257/2012, §4(1).

허권의 실시 계약(licensing)은 참여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에 한정하여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25개 참여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 참여 회원국을 상대로 하여 특허권(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⁴⁰⁾

유럽특허청에 의해 허여된 기존의 「유럽특허」가 상기 25개 참여 회원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특허청구범위(청구항)를 가지는 것이라면, 유럽특허청의 “단일특허등록부(Register for Unitary Patent Protection)”에 「단일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단일특허등록부에 「단일특허」로 등록된 「유럽특허」는 하나의 특허로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취소·제한 등 권리의 변동은 25개 참가 회원국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⁴¹⁾ 참가 회원국은 국내특허로 취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⁴²⁾

3. 특허료(renewal fees)

「단일특허」의 유지를 위한 특허료는 보호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⁴³⁾ 특허료에 따른 수

40) 현행 유럽특허제도 하에서도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제한적 설정이 가능하다. 안재현, 앞의 논문, 13면.

41) 안재현, 위의 논문, 13면.

42) “단일특허등록부에 단일 효과가 등록된 경우에는 모든 참가 회원국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항을 가지는 「유럽특허」는 참가 회원국에서 단일효과의 이익을 향유한다.” Regulation No. 1257/2012, §3(1); “단일화 된 특허 보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중 특허 보호를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 회원국은 「유럽특허」가 그들의 영토내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로서 효력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야 한다.” Regulation No. 1257/2012, Preamble para 8.

43) “특허권자는 「단일특허」를 위한 (연간)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특허료는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불되어야 하며... 「단일특허」에 의한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허료는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은 특허료와 같은 형태로 혁신을 제고하고 유럽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Regulation No. 1257/2012, Preamble para 19.

입의 50%는 유럽특허청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 회원국에 배분한다.⁴⁴⁾

뿐만 아니라,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은 License of Right 제도⁴⁵⁾를 도입하여, 단일특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건 하에 실시권을 허락할 의사가 있음을 유럽특허청에 밝히고 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⁶⁾

4. 번역비용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거소나 주영업소가 있는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번역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⁴⁷⁾ 출원단계에서부터 출

44) “유럽특허청은 제11조에 규정된 「단일특허」의 특허료로 지불된 금액의 50%를 보유하여야 한다. 잔여금액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특허료 배분의 비율에 따라 참가 회원국에 배분되어야 한다.” Regulation No. 1257/2012, §13(1).

45)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특허의 활용 촉진 및 실시권 설정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특허의 독점적 실시를 원치 않는 특허권자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겠다고 미리 선언하고 특허료 감면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하며, “실시허락준비선언(declared readiness to grant licenses) 제도”라고도 한다. 심미랑, 앞의 논문, 50면.

46) “「단일특허」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의 경제적 이용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의 권리자는 적절한 대가를 받고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적절한 대가를 받고 실시권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유럽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가 그러한 내용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럽특허청은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특허료의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Regulation (EU) No. 1257/2012, Preamble para 15; “「단일특허」의 권리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유럽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Regulation (EU) No. 1257/2012, §8(1).

47) “특히 중소기업들이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이 유럽연합의 어떠한 공식 언어로든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유럽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보완 조치로서,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지만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는 아닌 언어로 출원서류를 제출하여 「단일특허」를 취득한 회원국

원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⁴⁸⁾

<표-4>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제도 비교

	「유럽특허」	「단일특허」
법적근거	유럽특허조약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 (Regulation No. 1257/2012)
대상국가	유럽특허조약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운영기관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
특허의 성격	지정국 내에서만 유효한 각 국 내특허들의 묶음	유럽연합 전역(이탈리아, 스 페인 제외)에서 유효한 특허

내에 거소나 주영업소를 둔 특허출원인에게 유럽특허청 관할 소송 언어로 특허문헌을 번역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Regulation No. 1260/2012, Preamble para 10; “「유럽특허」의 출원서류가 유럽특허조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언어로도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참가 회원국은 유럽특허조약 제14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거하여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출원서류를 제출한 특허출원인을 위하여 유럽특허청에 번역비용의 최대 한도까지 보상을 위한 제도의 집행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Regulation No. 1260/2012, §5(1); “제1항에 명시된 보상 제도는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을 통해 운영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거소나 주영업소를 둔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Regulation No. 1260/2012, §5(2).

48) 뿐만 아니라, 특허문헌의 번역과 관련하여, 유럽특허청은 영어 등 7개 언어로 출원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2년 3월 1일부터 유럽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진석, 앞의 논문, 62면.

제 3 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유럽특허」	「단일특허」
취득요건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후 각 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	유럽특허청에 등록
번역비용	유럽특허조약 회원국 등록 시 각 국의 언어로의 번역에 드는 비용 (13개국 등록 시 평균 번역비용 14,000유로)	특허출원 시 「단일특허」 공식 언어로 제출 (번역비용 600~700유로 예상)
사법절차	각 국의 법과 제도에 따름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통한 단일화 된 절차에 따름

(출처: 박진석,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경과와 전망)⁴⁹⁾

제 2 절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⁵⁰⁾

1.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관할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모든 참가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2심제로 운영)된다.⁵¹⁾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하여되어 유효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효된 이후에 허

49) 박진석, 앞의 논문, 67면의 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함.

50) 안재현, 앞의 논문, 15-23면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정리하여 작성하였다.

51) Alexandra West & Siddharth Kusumakar, *Unitary Patents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Vol. 19 Iss. 4, 105 (2013).

여된 「유럽특허」, 그리고 동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출원 중인 「유럽특허」를 관할한다.

2. 1심법원

1심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국내 지법원(local divisions)과 역내 지법원(regional divisions)으로 구성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에 본원을 두고, 런던과 뮌헨에 분원을 두며, 담당사건의 기술 분야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표-5>에서와 같이 분담한다.

<표-5> 1심법원의 관할 분류표

파리 본원(Paris seat)	런던 분원(London seat)	뮌헨 분원(Munich seat)
Section B: 처리조작, 운수 Section D: 섬유, 종이류 Section E: 고정구조물(건축, 토목) Section G: 물리학 Section H: 전기	Section A: 생활필수품 Section C: 화학, 야금	Section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발

국내 지법원(local divisions)은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 내에 설치한다. 연간 특허사건이 통합 특허법원 설립협정 발효일 전 3년 연속 100건이 넘으면 체약국의 신청에 따라 100건당 하나의 국내 지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체약국 내 국내법원은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다. 역내 지법원(regional divisions)은 2개 이상의 체약국 요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항소법원

특허침해, 무효 및 특허비침해 확인소송 등 특허소송의 1심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에서는 법률문제(points of law)뿐만 아니라 사실문제(matters of fact)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는 1심 재판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예외적일 때 절차 규정에 따라 1심법원으로 취소 환송할 수 있다. 사건이 취소 환송된 때에는 1심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하여 항소법원의 판결에 기속된다.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두며, 항소법원에 등록처(Registry)를 두고 모든 사건에 관한 기록, 등록, 열람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심법원의 각 지법원에는 부등록처(Sub-registries)를 두고 부등록처는 모든 사건을 항소법원의 등록처에 통보한다.

4. 재판부의 구성

1심법원의 재판부는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⁵²⁾ 3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사건마다 법관의 풀(pool)에서 뽑아 구성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또는 역내 지법원은 1심법원의 장에게 그 사건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심사관⁵³⁾ 1인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52) 참가 회원국에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Id.* at 105.

53) 기술 분야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민사소송 및 특허 절차에 관한 실무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Id.*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2인과 기술심사관 1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3인과 기술심사관 2인으로 구성한다.

5. 재판 관할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1심법원의 재판 관할은 1) 침해발생 국가의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 2) 피고 거소(피고가 복수인 경우엔 피고 중 하나의 거소) 또는 주영업소가 있는 체약국의 국내 지법원 또는 그 체약국이 참여하는 역내 지법원, 3) 피고의 거소 또는 주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소가 있는 체약국의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의 거소, 주영업소, 영업소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외에 있는 경우, 침해 발생 지역의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 또는 중앙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역내 지법원에 특허소송이 계류 중인 때, 특허 침해가 세 곳 이상의 역내 지법원 관할 지역(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중앙법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동일한 특허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 간 소송이 여러 지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최초의 수소(受訴)법원이 전 사건을 관장한다. 복수의 피고에 대한 일괄 소송은 그 피고들이 서로 상업적 관계가 있고, 동일한 침해에 관련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특허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중앙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법원에 침해 소송이 이미 제기된 때에는, 대상 특허와 당사자가 같을 경우, 특허비침해확인소송이나 특허무효소송도 같은 지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법원에 무효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계류 중인 경우, 동일 특허, 동일 당사자

간 침해소송은 그 중앙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관할법원 규정에 따른 해당 지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법원은 규정에 따라 침해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중앙법원으로 이관할 수도 있다. 중앙법원에 특허비침해확인소송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법원에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그 비침해확인소송은 중앙법원에서 계속 관할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침해소송이나 무효소송 또는 비침해확인소송 등을 지법원이든 중앙법원이든 상관없이 당사자가 선택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한 계약국이나 침해혐의자의 거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계약국이 국내 또는 역내 지법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소송이라 하더라도 중앙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6. 대리인

당사자는 참가 회원국의 법원에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대리하여야 한다. 유럽특허소송인증서(European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 등의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유럽특허조약 제134조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럽 변리사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각국의 변리사는 대리인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협약의 발효와 경과규정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은 2014년 1월 1일 또는 13번째 계약국의 비준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달의 1일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7년의 경과기간으로 두어, 「유럽특허」의 침해 또는 무효 소송은 각국의 국내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7년의 경과기간은 추가로 최대 7년 더 연장될 수 있으며, 경과기간의 만료 당시에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그 국내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 경과기간의 만료 전에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한 「유럽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경과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통합 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늦어도 경과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항소법원의 등록처에 통합특허법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번역 비용이다. 따라서 단일특허제도에서는 사용언어를 실질적으로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특허출원인이 유럽연합 공용어들 중에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이 유럽특허청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에 하나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일특허등록부”에 「단일특허」로 등록된 「유럽특허」가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유럽연합 공식 언어로 공개된 때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허의 침해 등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가 발생한 지역의 공식 언어 또는 침해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된 출원서(명세서 포함)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 분쟁 사건을 맡게 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 법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번역에 드는 비용은 모두 특허권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침해자가 특히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기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일 경우, 침해자가 명세서 전문 번역이 제공되기 전에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선의로 침해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번역문에 관한 협정의 시행일로부터 최대 12년간의 경과 기간 중에는,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를 절차언어로 선택한 경우에는 특허명세서 (specification)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재판언어로 선택한 때에는 유럽연합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특허청은 특허문헌의 기계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위 협정 시행 6년 뒤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최대 12년간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가 특허 출원서와 명세서의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제 4 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제 1 절 서 설

출범을 앞둔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내년부터는 한 번의 특허 출원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의 소송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 여부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일관적인 특허소송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단일특허제도에 의한 유럽에서의 특허 보호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일특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들의 언어가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에서 제외되는 선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 언어만을 공식 언어로 채택한 단일특허제도의 언어에 관한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또한 다른 회원국들이 그들의 반대를 피해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가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절차⁵⁴⁾를 위법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⁵⁵⁾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도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이 유럽연합 법규에 맞

54) “강화된 협력” 절차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최소 9개국 이상) 다른 회원국들의 참여 없이 유럽연합 체제 내의 어떤 지역에서 통합 또는 협력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55) See Joe Kirwin, *Italy, Spain File Legal Challenges Against EU Single Patent Plan at CJE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7, 9 (2011).

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⁵⁶⁾ 그 밖에도, 일부 특허법 전문가 및 특허 실무가들이 법관의 전문성 및 경험의 부족,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그리고 중소기업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효과 등을 이유로 들어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 2 절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1. 이탈리아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⁵⁷⁾

「단일특허」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통해서만 출원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의 언어 계획에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반대함으로써 인해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요하는 단일특허제도의 언어 방식에 관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에 따른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 3월 10일,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연합 25개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을 구축하여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⁵⁸⁾ 이탈리아 정부는 이사회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여, 2011년 6월 10일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사회와 같은 결정이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⁵⁹⁾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승인한 이사회와 같은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56) See Joe Kirwin, *Court of Justice Strikes Down Proposed EU Patent Cour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4, 10 (2011).

57) Case C-274/11.

58) Council Decision 2011/167/EU of 10 March 2011.

59) See *Società Italiana Brevetti, Italy's Submissions in Appeal Against Unitary EU Pat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8, 16 (2011).

(1) “강화된 협력”에 대한 승인 권한의 존부

Treaty on European Union (이하 “TEU”)⁶⁰⁾ Article 20 para 1은 유럽 연합이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범위 이외의 영역(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권한을 공유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TEU 및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⁶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유럽연합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⁶²⁾ 그런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인정되는 권리(European rights)’의 창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특허제도 도입은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 구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게는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

(2) 권한의 남용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 구축을 통해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유럽연합각료이사회가 만

60) “유럽연합조약”으로도 불린다.

61)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도 불린다.

62) TEU Article 20.

1. Member States which wish to establish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mselv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non-exclusive competences may make use of its institutions and exercise those competences by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eaties, subject to the limi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arrangements laid down in this Article and in Articles 326 to 33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Union.

Enhanced cooperation shall aim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Union, protect its interests and reinforce its integration process. Such cooperation shall be open at any time to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8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장일치의 결정에 의해 유럽 지적재산권을 위한 언어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TFEU Article 118⁶³)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곧 모든 “강화된 협력”이 TEU와 TFEU 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TFEU Article 326⁶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절차적 요건의 위반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 구축의 경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채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협력”에 대한 승인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의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협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써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TEU Article 20 para 2⁶⁵)에 위배되는 것이다.

63) TFEU Article 118.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shall establish measures for the creation of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vide unifo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the Union and for the setting up of centralised Union-wide authorisation,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arrangements.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shall by means of regulations establish language arrangements for the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64) TFEU Article 326.

Any enhanced cooperation shall comply with the Treaties and the law of the Union. Such cooperation shall not undermine the internal market or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It shall not constitute a barrier to or discrimination i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nor shall it distort competition between them.

65) TEU Article 20.

2. The decision authorising enhanced cooperation shall be adopted by the Council as a last resort, when it has established that the objectives of such cooperation cannot be attain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by the Union as a whole, and provided that at least nine Member States participate in it. The Council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329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4) 내부시장 및 유럽연합 통합의 약화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 구축을 통해 단일특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일특허의 효과가 유럽연합 전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시장, 자유경쟁,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화시켜 TFEU Article 118⁶⁶⁾ 및 Article 326⁶⁷⁾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단일특허제도의 언어에 관한 계획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TEU Article 20 para 1⁶⁸⁾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스페인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⁶⁹⁾

스페인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의 언어에 관한 계획이 스페인과 스페인계 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가치 중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6월 3일에 단일특허제도를 승인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⁷⁰⁾

스페인 정부는 25개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을 구축하여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한 이사회에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66) See TFEU Article 118.

67) See TFEU Article 326.

68) See TFEU Article 20.1.

69) Case C-295/11.

70) See Brett Allan King, *Spain Continues to Defend Case for Adoption of Spanish for Unitary Pat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8, 21 (2011).

(1) 권한의 남용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력” 구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특허조약 제142조⁷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협약”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 회원국을 협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강화된 협력”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

새로운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해결 등 단일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로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승인한 것은 유럽연합의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이다.

(3) “강화된 협력”에 관한 요건 불비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은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며,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고 왜곡된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내부시장과 경제적·사회적·영토적 단결을 약화시켜 TFEU Article 326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TEU Article 20 para 1에 따르면, “강화된 협력”은 유럽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합

71) EPC Article 142.

(1) Any group of Contracting States, which has provided by a special agreement that a European patent granted for those States has a unitary character throughout their territories, may provide that a European patent may only be granted jointly in respect of all those States.

(2) Where any group of Contracting States has availed itself of the authorisation given in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hall apply.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EU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위해 발동된 “강화된 협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참여국에 대한 존중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경우, 비참여국인 스페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스페인이 “강화된 협력”에 참여할 권리 역시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FEU Article 327⁷²⁾에 위배된다.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2012년 7월 10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면서 제기한 두 소송(Cases C-274/11, C-295/11)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 4월 16일에 이들 소송들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⁷³⁾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 TFEU Article 118⁷⁴⁾에 근거하여 내부시장의 구축 및 기능의 맥락에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을 창설한 것이며, 언어 방식에 관한 사항 역시 내부시장의 구축 및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내부시장에 관한 사항은 TFEU Article 475⁷⁵⁾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

72) Article 327.

Any enhanced cooperation shall respect the competence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ose Member States which do not participate in it. Those Member States shall not impede its implementation by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73) OJ C 164, 8.6.2013, p. 3-4.

74) See TFEU Article 118.

75) TFEU Article 4.

2. Shared competence between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applies in the fol-

합과 회원국이 권한을 공유하는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화된 협력”의 구축 대상이 되며, 이사회는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이 권한의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TEU Article 20**과 **TFEU Articles 326** 내지 **334**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강화된 협력”을 위해 유럽연합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만장일치의 결정은 “강화된 협력”에 참가한 회원국들만의 표결로써 결정되기 때문에⁷⁶⁾⁷⁷⁾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주장과는 달리 **TEU Article 20**과 **TFEU Articles 326**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회원국들 간의 “강화된 협

lowing principal areas:

- (a) internal market;
- (b) social policy, for the aspects defined in this Treaty;
- (c)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 (d) agriculture and fisheries, excluding 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 (e) environment;
- (f) consumer protection;
- (g) transport;
- (h) trans-European networks;
- (i) energy;
- (j)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 (k) common safety concerns in public health matters, for the aspects defined in this Treaty.

76) TFEU Article 333.

1. Where a provision of the Treaties which may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enhanced cooperation stipulates that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laid down in Article 330, may adopt a decision stipulating that it will act by a qualified majority.

77) TFEU Article 330.

All members of the Council may participate in its deliberations, but only members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participating in enhanced cooperation shall take part in the vote.

Unanimity shall be constituted by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only.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

력” 구축을 위해 채택된 하나의 방편으로, 유럽특허조약 제142조에서의 국제협약의 체결을 통해 단일한 특허를 도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특정 회원국을 협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 전역에 효과가 미치지 않는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 내부 시장과 경제적·사회적·영토적 단결을 약화시켜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유럽 각 국가의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유럽 특허제도에 비추어 볼 때,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특허제도가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절차적 요건 위반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재판부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특허제도 및 언어 방식의 채택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사회가 “강화된 협력”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TEU Article 20에 위배되지 않으며, TFEU Article 118이 규정하고 있는 만장일치의 결정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이사회가 단일특허제도 도입 승인이 비참여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능력이나 권리 또는 의무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언어 방식의 채택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강화된 협력”을 통해 비참여국들이 그들의 능력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거나 의무를 지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이것이 “강화된 협력”에 참여한 국가들이 비참여국이 만약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였더라면 반대하였을지도 모르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까지 금지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규정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TFEU Article 327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단일특허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사법 체계의 구축은 “강화된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럽연합 사법체계의 존중에 관한 스페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 3 절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

1.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1)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소송의 분할에 따른 제문제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은 소송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통합특허법원(Divisions)이 그 재량으로 특허의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과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동 협약에 따르면, 양자를 분리하여 심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고, 중앙법원은 유효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특허법 전문가들과 특허 실무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소송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⁷⁹⁾

예컨대, 독일의 법원이 현재 그러한 것처럼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소송을 분할하여 심리하고, 영국의 법원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특허권자는 독일에 소송을 제기하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송의 분할로 독일에서의 경우와 같이 특허의 유효성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금지명령(injunction)을 얻어낼 확률이 그 만

78)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2013/c 175/01), §15.

79) House of Commons European Scrutiny Committee, *The Unified Patent Court: Help or Hindrance?*, Sixty-Fifth Report of Session 2010-2012 (25 April, 2012) 19, available at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euleg/1799/1799.pdf>.

큼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⁸⁰⁾ 이처럼 특허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얻게 될 확률이 높은 법원을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법정지 선택 (forum shopp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특허권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송을 분할하여 심리하는 법원을 선호하게 되어 그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아진다.⁸¹⁾⁸²⁾

그 밖에도, 중앙법원의 경우에는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에 관하여 동시에 심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송 분할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6> 주요 소송대상에 대한 관할 통합특허법원⁸³⁾

협약(조문)	소송대상	법 원	비 고
§15(1)(a)	침해소송	피고가 참가 회원국 이외에 거소나 주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이 있을 경우에 한	

80) *Id.* at 20.

81) *Id.*

82) 현재, 유럽연합에서의 전체 특허소송의 약 70%가 독일법원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뒤셀도르프 법원에 70% 정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유럽연합에서의 전체 특허소송의 약 50%가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일법원은 판사들의 전문성의 높고,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소송당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허소송 시 일반적으로 독일법원 또는 영국법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특허법원의 이용으로부터 오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진석, 앞의 논문 68면.

83) Trevor Cook, *Has an Agreement been Reached on a Unitary Patent and a Unified Patent Court for Europe, and if so, what is it?*,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ol. 17, p. 570 (Oct. 2012).

제 4 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협약(조문)	소송대상	법 원	비 고
		함, 없다면 중앙법원)	
§15(1)(a1)	비침해선언소송	중앙법원	- 3개월 이내에 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계류됨 (§15a(5))
§15(1)(b)	가집행과 금지명령 청구소송	피고가 참가 회원국 이외에 거소나 주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없다면 중앙법원)	
§15(1)(c)	취소소송	중앙법원	- 침해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을 경우 (§15a(3)) - 취소소송의 제기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에는 침해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
§15(1)(c1)	취소소송에 대한 반소(反訴)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 (국내 지법	- 국내 지법원 또는 역내 지법원은 반소(反

협약(조문)	소송대상	법 원	비 고
		원 또는 역내 지법원이 있을 경우)	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중앙법원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짐 -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중앙법원에 이관할 수 있음 (§15a(2))

(2) 전문성과 경험 있는 법관의 확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특허법원의 재판부는 특허소송에 관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증명된 능력을 가진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우선,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 기간 내에 그러한 능력을 갖춘 다수의 법관들을 찾아내거나 양성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⁸⁴⁾

또한, 법관의 전문성과 경험은 법관의 출신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는 편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매우 적은 수의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법관들 사이의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4) *Id.* at 25.

(3) 통합특허법원의 운영비용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치되어질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유럽연합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따른 특허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4)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특허료 등 「단일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통합특허법원을 통한 소송비용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특허법 전문가들과 특허 실무자들은 현재의 통합특허법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⁸⁵⁾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연간 허여되는 특허 중에서 단지 2%만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유효한 특허이며, 40% 이상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5개 국가에서만 유효한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이는 곧 대부분의 특허권자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 전역에서 유효한 특허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자, 특히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affordable cost*)만을 부담하여 유럽연합의 25개 참가 회원국에서 유효한 하나의 특허를 이 등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단일특허」를 등록 및 유지에 드는

85) House of Commons European Scrutiny Committee, *supra* note 79, at 28.

86) *Id.* at 27.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비용에 민감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유효한 특허를 등록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일 특허제도가 그다지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없으며, 그 실효성마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2.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안)」(The former draft of the unified court agreement as at April 2009)은 특허와 관련하여 개인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 중 상당한 수의 소송 - 특히 특허의 침해 또는 침해 위협에 대한 소송,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및 보상에 관한 일정한 소송 - 을 통합특허법원의 독점적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특허법원이 특허 관련 주요 소송을 심리하게 되며, 그 결과 특허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의 법원은 통합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소송 이외의 소송만을 심리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3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처럼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는 통합특허법원의 설치가 유럽연합의 제도 및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⁸⁷⁾ 재판부는 동 협약(안)에 따른 통합특허법원의 설치가 개별 회원국의 법원이 가지는 EU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⁸⁸⁾ 동 협약(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EU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의 국내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구해

87) See Joe Kirwin, *Court of Justice Strikes Down Proposed EU Patent Cour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4, 10 (2011).

88) *Id.*

야만 하는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⁸⁹⁾⁹⁰⁾ 또한, 재판부는 과거에도 국제조약에 의해 이와 유사한 계획이나 새로운 법원의 설치가 승인된 바 있으나, 동 협약(안) 상의 통합특허법원의 경우 이전의 선례에서와는 달리 “국제조약상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의 법령상의 규정까지도 해석·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⁹¹⁾

제 4 절 소 결

단일특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 일부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들의 언어가 유럽연합의 공용 언어에서 제외되는 선례를 막기 위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 언어만을 공식 언어로 채택한 단일특허제도의 언어에 관한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소송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강화된 협력”의 구축을 통해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TEU 및 TFEU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락되어졌다.

그러나 다수의 특허법 전문가들과 특허 실무가들이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가 통합특허법원의 설치가 유럽연합의 제도 및 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유럽사법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

89) Daniel Brook et al., *How Will the Implementation of Europe's Unitary Patent Package Shape Up?*,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7 Iss. 2, 31 (2013).

90) 동 협약(안)은 이후 비회원국의 가입을 제한하고, 회원국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간의 이관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는 등 대폭 수정되었다. *Id.*

91) Kirwin, *supra* note 56, at 10.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을 분할하여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정지 선택의 문제를 야기하여 특허권자의 효율적인 권리실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관들 간의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 기간 내에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다수의 법관들을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단일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따른 특허료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현행 유럽특허제도와 단일특허제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단일특허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 5 장 결 론

지난 40여 년간의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다. 단일특허제도가 특허출원비용의 측면이나 특허의 유효·무효 여부 또는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유럽 전역에서 일관성 있는 판결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특허출원비용⁹²⁾을 약 80% 이상 줄이고, 특허소송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상이한 특허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럽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⁹³⁾ 2014년 1월 1일에 출범할 예정인 단일특허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며, 유럽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⁹⁴⁾

그동안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아 왔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되었으나, 단일특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관과 기술심사관의 참여 및 저비용의 재판 기회가 보장된다면, 통합특허법원이 성공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관과 기술심사관의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통합특허법원의 운영비용의 조달에 관한 보완책과 중소기업 등에

92)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단일특허」의 출원비용이 궁극적으로는 5,000유로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The Economist*, supra note 8, at 1.

93) 박진석, 앞의 논문, 53면.

94) 박진석, 위의 논문, 68면.

제 5 장 결 론

게 재판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⁹⁵⁾

95) 유럽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은 통합특허법원 관련 예산을 「단일특허」의 출원에 따른 특허료만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받아 통합특허법원을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석, 위의 논문, 68면.

참고문헌

- 박진석, EU 특허제도 통합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 지식과 권리 통권 제15호 (2012)
- 심미랑,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P Insight Vol. 1 창간호 (2013)
- 안재현,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2호 (2013)
- Alexandra West & Siddharth Kusumakar, *Unitary Patents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Vol. 19 Iss. 4, 105 (2013)
- Brett Allan King, *Spain Continues to Defend Case for Adoption of Spanish for Unitary Pat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8, 21 (2011)
- Daniel Brook et al., *How Will the Implementation of Europe's Unitary Patent Package Shape Up?*,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7 Iss. 2, 31 (2013)
- House of Commons European Scrutiny Committee, *The Unified Patent Court: Help or Hindrance?*, Sixty-Fifth Report of Session 2010-2012 (25 April, 2012), available at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2/cmselect/cmeuleg/1799/1799.pdf>
- Joe Kirwin, *Court of Justice Strikes Down Proposed EU Patent Cour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4, 10 (2011)

참 고 문 헌

- Joe Kirwin, *Italy, Spain File Legal Challenges Against EU Single Patent Plan at CJE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7, 9 (2011)
- Kevin P. Mahne, *A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for the European Union: An Analysis of Europe's Long Standing Attempt To Create a Supranational Patent System*, 9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162 (2012)
- Reto M. Hilty et al., *The Unitary Patent Package: 12 Reasons for Concern*,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Journal*, Vol. 41 Iss. 10 (2012)
- Società Italiana Brevetti, *Italy's Submissions in Appeal Against Unitary EU Pat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 25 Iss. 8, 16 (2011)
- The Economist, *The EU's Unitary Patent: Yes, Ja, Oui, No, No* (Dec. 15th, 2012), *available at*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568436-after-40-years-trying-europe-has-unified-patent-system-sort-yes-ja-oui-no-no>